



전 북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

1. 관련
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
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

마. 운영지원과-2559(2016.04.22.,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통보)

2.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「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관서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추진내용

1) 연간 기본계획 수립

2) 성희롱 방지조치

3)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

4) 자체점검 및 연간 실적 제출('16. 11월~'17. 2월)

나.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: 붙임1

3. 아울러 성희롱 방지 및 폭력예방교육 사용 예산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니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배정내역

예산과목	배정액(천원)	관서별 배정내역	비고
7218-280-210-16	3,400	자청 및 총괄국 각 200천원 (자청1, 총괄국 16)	자청예산 재배정

나. 예산활용 범위: 외부(일반,전문)강사 초청 강사료 등

1) 교육 대상: 전직원(기관장, 비정규직, 사회복지요원 등 포함)

2) 권장 교육횟수 및 시간: 연 2회, 회당 2시간(*유형별 1시간 이상 필수)

- 붙임 1. 2016년 전북지방우정청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.
2. 2016년 유형별 평가배점표 1부.
3. 201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(여성가족부 세부지침) 1부. 끝.

전북지방우정청장



수신자 전북지방우정청 각 과[실]장, 전 관서장

★기록연구사

정진희

운영지원과장

유기권

사업지원국장

장재혁

청장

06/15

김병수

협조자

시행 운영지원과-3062 (2016.06.15.) 접수 ()

☎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(효자동2가) / <http://koreapost.go.kr/jb>
전화 [063-240-3521](tel:063-240-3521) /전송 063-236-3519 / la1a1a@koreapost.go.kr / 공개